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2
----------	------

제출일자: 2019. 3. 11

제 출 자: 달성군의회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구지축구장 시설내역 추가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상한액을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 별표 1, 체육시설(구지축구장)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나. 안 별표 2, 구지축구장 전용 사용료 상한액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2019. 2. 12.~ 2019. 3. 4.(20일간)

가) 예고결과: 2019. 3.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1건)

- 의견내용: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중 구지축구장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반대

6)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 지 축 구 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 풍 테 니 스 장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화 원 게 이 트 볼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곡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 츠 파 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강 변 체 육 시 설	낙 동 강	달 성 강 변 야 구 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 호 강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 용 사 용	체 육 관	주 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 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 목 적 강 당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강습	어린이	월 80,000 (주 2회)		-	
			일반	월 60,000 (주 3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회 원 권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가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사 체 육 공 원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 딩 크 드림필드풋살장	주 간 (1시간)	30,000	40,000	90,000	120,000	
		야 간 (1시간)	40,000	60,000	120,000	180,000	
명 체 육 공 원	인 라 인 스 케 이 트 장	주·야간	-	-	-	-	
	다 목 적 운 동 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 민 운 동 장			주·야간	-	-	-	-
논 축 구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 살 장	주 간 (1시간)	35,000	45,000	105,000	135,000	
		야 간 (1시간)	45,000	55,000	135,000	165,000	
구 축 구 지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강변야구장	마 사 토 인 조 잔 디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65,000	90,000	150,000	20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달성 스포츠파크	주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 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 조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목 적 체 육 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강습료	프로그램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개인사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하빈지구 체육시설	야 구 장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 구 장	주 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 구 장	주·야간	-	-	-	-	
	족 구 장	주·야간	-	-	-	-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 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 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80,000			
		1회	20,000			
	실외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30,000			
		1회	15,000			
비 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비 고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비 고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 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비 고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주요 시설</th></tr><tr><td colspan="3">(생략)</td></tr><tr><td colspan="3">신설</td></tr><tr><td colspan="3">(생략)</td></tr></table>	명칭	위치	주요 시설	(생략)			신설			(생략)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주요 시설</th></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구지 축구장</td><td>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td><td>- 축구장</td></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able>	명칭	위치	주요 시설	(현행과 같음)			구지 축구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현행과 같음)		
명칭	위치	주요 시설																							
(생략)																									
신설																									
(생략)																									
명칭	위치	주요 시설																							
(현행과 같음)																									
구지 축구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구 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구 지 축구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생략)						(현행과 같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